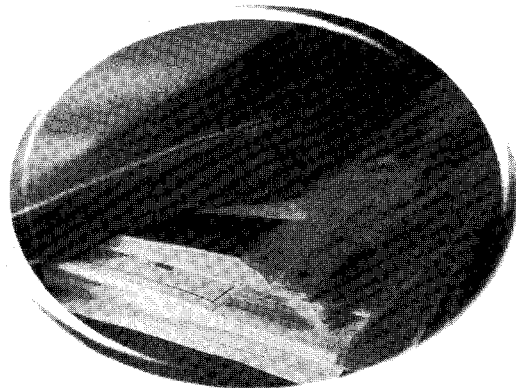


## 건설공제조합

# 최저가낙찰 보증조건 강화

건설공제조합은 지난 5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거부 낙찰률을 예가대비 73%로 상향조정하는 등 보증인수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.



건설공제조합은 공사이행보증 거부낙찰률을 종전 60%에서 73%로 대폭 상향조정한데 이어 낙찰률이 78~75%일 때는 예가의 78%에 해당하는 금액과 투찰가격간 차액의 1.5배에 해당하는 현금(예금증서 국공채 등)을 담보로 징구하고 낙찰률이 75~73%일 경우에는 차액의 5배에 해당하는 현금담보를 제공케 하는 등 예정가격 78% 미만 낙찰업체에 대한 현금담보부담을 신설하는 한편 예가대비 75% 미만 투찰업체에 대한 이행

보증은 연간 1건(매사업년도, 공동수급업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)에 한정했다.

이와 함께 공제조합은 보증거부 낙찰률의 상향 조정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공사이행능력심사제도와 낙찰률에 따른 수수료 할증제도는 폐지했다.

건설공제조합은 이 같은 공사이행보증인수조건 강화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의 낙찰률이 73%로 유지돼 건설업계의 저가입찰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공사이행보증조건 변경

구 분	현 행	변 경
보증거부낙찰률	예정가격의 60%	예정가격의 73%
담보징구낙찰률	예정가격의 70%	예정가격의 78%
담보징구 범위	예정가격의 70%와 낙찰금액과의 차액의 1.5배	- 73% 이상 75% 미만 낙찰시/ 예정가격의 78%와 낙찰금액과 차액의 5배 - 75% 이상 78% 미만 낙찰시/ 예정가격의 78%와 낙찰금액과의 차액의 1.5배
담보 종류	현금, 정기에·적금증서, 국·공채, 보증사채, 지급보증서·지급보증어음	현금, 정기에·적금증서, 국·공채(보증사채, 지급보증서·지급보증어음 제외)
공사이행능력심사	공사이행능력 심사하여 1~8등급으로 구분	심사제도 폐지
업체당 보증허용건수	제한 없음	예정가격의 75% 미만은 연간 1건만 허용
수수료 할증	예정가격의 70% 미만시 할증	낙찰률에 따른 할증제도 폐지

※현행은 공사이행등급 1등급 기준임.

